3. 기숙사 운영 규정 (제 6 장 처분)

제29조 (처분) 사생으로서 학생신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할 수 있다.

제30조 (처분의 종류와 방법)

- 1. 경고: 누계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반성문을 작성하고 학부모와 담임교사에게 확인을 받는다.
- 2. 교내봉사: 누계 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반성문을 작성하고 학부모와 담임교사에게 확인을 받은 후, 기숙사부장과의 상담을 통해 교내봉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10시간의 봉사활동(1시간당 1점 감점)을 통해 벌점 10점을 감한다. 교내봉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에 봉사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5일간 단기퇴사 조치하며 벌점 5점을 감한다.
- 3. 단기퇴사: 누계 벌점이 30점 이상인 경우,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고 10일간(공휴일 제외) 퇴사 조치하며, 벌점 10점을 감한다.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선도위원회에 위임하다.
- 4. 장기퇴사: 누계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위원회를 통해 퇴사기간을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선도위원회에 위임한다.
- 5. 상기 1, 2, 3, 4에서 누계 점수가 10점(또는 20점) 미만인 상태에서 당일 벌점 추가로 인해 누계 점수가 20점(또는 30, 40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한다.
- 6. 교내봉사 및 단기퇴사는 별도의 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장의 결정으로 처분한다. 단, 벌점 40점 이상인 장기퇴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한다.
- 7. 통보: 처분사항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31조 (상점 부여, 벌점 차감)

- 1. 1학기 입사자가 2학기에도 입사할 때, 누계 벌점이 1점 이상인 경우 벌점을 최대 10점 차감하며, 벌점이 10점 이하인 경우 모두 0점으로 한다.
- 2. 입사자가 진급할 때, 누계 벌점을 모두 삭제한다.
-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점을 부여하여 벌점을 차감한다. (상점은 누적 관리하고, 상점 1점 당 벌점 1점을 차감한다.)

연 번	내 용	상점	비고
1	기숙사 담당 교사 또는 사감 일손 돕기(간단한 심부름 포함)	1	
2	소등 당번(1주일)	3	
3	진공청소기 필터 및 통 청소 - 2주 1회 대청소 후. 충별로 신청. 1대당 상점 부여	2	

연 번	내 용	상점	비고
4	분실물 습득 후 신고	1	
5	학교폭력 제지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공을 세운 학생	10	
6	신체적/정신적 어려운 급우 도와주기가 인정되는 경우(지속적인 경우. 2주일 마다 상점 부여)	3	
7	계단 난간 먼지 청소 (21:00-21:30) - 1주에 1번 층별로 신청	1	
8	신문 1주일 갈아 끼우기(한겨레, 영자신문 등)	2	
9	아침점호 도우미: 층별로 복도에 불 켜고, 방문 열어 주기(충별로 2명). 1주일 마다 상점 부여	3	
10	상점 항목에 대한 기타 추가할 항목 채택시	2	

제32조 (벌점 사항) 사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하며, 그 경 중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 할 수 있다.

연번	위 반 사 항	벌점	비고
1	외출, 외박 후 귀사 시간이 늦은 자, 생활 시간 미엄수자	1	
2	점호에 불참한 자	1	늦게 참가하면 주의 (3회 1점)
3	사물의 정리정돈이 불량한 자 또는 호실	1	
4	학부모의 무단 호실 방문	1	
5	기숙사 내 각종 파티 행위자(기념일, 생일 등)	1	관련자 전원
6	주말 식사 시간 외 쉬는 시간에 생활실 출입하는 자	1	
7	무단으로 타 호실을 출입한 자	2	
8	호실 및 담당구역 청소 불이행 자 및 미 참여자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미참여자로 간주)	2	
9	정독실에서 타인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자	2	
10	선・후배에게 불손한 언행을 한 자	2	
11	전자기기를 학습목적 이외 사용하는 자(게임,영화,TV,유튜브 등)	2	
12	샤워장 출입 시 속옷 또는 맨몸으로 다니는 자. 정독실 자율학습시 잠옷을 입고 있는 자.	2	
13	사내 외부 음식물 배달 및 반입	3	
14	사생이 아닌 외부인을 기숙사로 데리고 오는 자	3	

연번	위 반 사 항	벌점	비고
15	외출, 외박 절차를 어긴 자	4	
16	수업 및 자율 학습 시간에 기숙사에 허락없이 들어가 있는 자	4	
17	기숙사내 일과 중 무단 외출자	4	
18	호실내 미용전열기구(고데기 등) 사용한 자	4	
19	호실 내 개인 소지 전열기구 사용자 및 한시적으로 허가된 전열기구(드라이기)를 사용 후 코드를 뽑지 않은 경우	5	
20	야간 소란 행위(취침 시간 이후 타인 수면 방해자 포함)	5	
21	동료 간에 싸움을 하는 자	5	
22	교내에서 이성간 과도한 스킨십(포옹, 키스 등)을 하는 자	5	
23	매월 외출5회, 외박 2회를 초과한 자. 아픈 경우는 예외로 한다(추가)	5	1회당 5점
24	출입문 이외의 경로(창문 등)로 출입하거나 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자	10	
25	무단으로 타 호실에서 취침한 자	10	
26	고의적으로 기숙사의 기물을 파손한 자	10	
27	교사 또는 사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자 또는 불손한 언행을 보이는 자는 1회 10점, 2회 이상은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10 이상	
28	사내 반입금지 물품 소지자 예) 인화물, 주류, 담배류, 흉기, 카드, 화투, 음란물 등	15	
29	야간 무단 이탈자	20	
30	외부인 또는 비사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	20	
31	동료, 선후배를 신체적, 정신적 괴롭히거나 협박	장기퇴사	
32	집단 따돌림을 한 경우	장기퇴사	
33	타인의 물건을 훔친 자	장기퇴사	
34	흡연(금연초 및 유사 담배류 포함), 음주, 각종 도박 행위를 하거나 본드 흡입 및 약물을 복용한 자	장기퇴사	
35	허락 없이 이성 호실에 출입한 자	장기퇴사	